

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1조~제5조 (생략)	제1조~제5조 (현행과 같음)	
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~ ④ (생략) ⑤ <별표 2>에서 정하는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성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(B2512-2)에 따른 신용등급 1~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 <별표 2>를 적용하지 않는다. ⑥ ~ ⑦ (생략)	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성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(B2512-2)에 따른 신용등급 1~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⑥ ~ ⑦ (현행과 같음)	- <별표2> '은행별 지원 제외 대상 신용등급' 삭제에 따른 수정
제7조~제9조 (생략)	제7조~제9조 (현행과 같음)	
제10조(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) 1. ~ 6. (생략) 7. 부동산업, 유흥업 등 <별표 3>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	제10조(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)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부동산업, 유흥업 등 <별표 2>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	- <별표2> '은행별 지원 제외 대상 신용등급' 삭제에 따른 수정
제11조~제12조 (생략)	제11조~제12조 (현행과 같음)	
제13조(제재) ① 1. (생략) ① 2.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.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<별표 4>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도 감축 ② (생략)	제13조(제재) ① 1. (현행과 같음) ① 2.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.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<별표 3>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도 감축 ② (현행과 같음)	- <별표2> '은행별 지원 제외 대상 신용등급' 삭제에 따른 수정
제14조 (생략)	제14조 (현행과 같음)	
(신설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<2020. 4. ></p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4월 1일(2020년 6월 한도배정)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	- 시행일 명시, 경과조치 마련

현행		개정(안)		비고
<별표 1>		<별표 1>		
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선정기준		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선정기준		
전산 요건	지원부문	선정기준 ¹⁾		
A1	창업기업	(생략)		
A2	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(단,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실적은 지원 제외)		- 벤처기업 범위 조정
A3	혁신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INNO-BIZ기업(단,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실적은 지원 제외) 및 MAIN-BIZ기업 - 기술신용보증기금,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<u>이</u> 발급한 기술평가인증서 보유 중소기업*(단,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실적은 지원 제외) * 협약체결 금융기관이 대출금원장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임을 명기하거나 대출취급점장이 <별지 제5호 서식>에 의거 확인한 경우에 한함 		- INNO-BIZ기업 범위 조정 -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포괄범위 조정
		(신설)		
		(신설)		
		(신설)		
A4	녹색기업	(생략)		
A6	추천기업	(생략)		
A8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별표 1-1>의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내 5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, 혁신기업,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(단, 벤처기업, 혁신기업중 INNO-BIZ기업 및 기술평가인증서 보유기업은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이면서 운전자금대출인 경우 지원 제외) 		-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범위 조정
		(생략)		
		(생략)		
		(생략)		
		(신설)		
A9	전입기업	(생략)		
A10	수출관련기업	(생략)		
A11	소재·부품 생산기업	(생략)		
A13	농림수산업 관련기업	(생략)		
A14	명절 및 재해자금 등	(생략)		
A15	기타 지원기업	(생략)		
전산 요건	지원부문	선정기준 ¹⁾		
A1	창업기업	(현행과 같음)		
A2	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(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)		
A3	혁신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INNO-BIZ기업(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제외) 및 MAIN-BIZ기업 -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 중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기술평가인증서 보유 중소기업*(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) * 협약체결 금융기관이 대출금원장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임을 명기하거나 대출취급점장이 <별지 제5호 서식>에 의거 확인한 경우에 한함 - 특허권* 보유 기업(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) * 대출시점 기준으로 등록료를 납부한 유효한 특허권 - 실용신안권* 보유 기업(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) * 대출시점 기준으로 등록료를 납부한 유효한 실용신안권 - 최근 2년 이내(대출시점 기준)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'산학연 collabo R&D'사업 참여기업 		- 혁신기업 범위 조정
A4	녹색기업	(현행과 같음)		
A6	추천기업	(현행과 같음)		
A8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별표 1-1>의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*, 혁신기업*,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 *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포함 - <별표 1-1>의 해당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최근 2년 이내(대출시점 기준) 협약과제를 완료한 기업 		-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포함
A9	전입기업	(현행과 같음)		
A10	수출관련기업	(현행과 같음)		
A11	소재·부품 생산기업	(현행과 같음)		
A13	농림수산업 관련기업	(현행과 같음)		
A14	명절 및 재해자금 등	(현행과 같음)		
A15	기타 지원기업	(현행과 같음)		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						
<p><별표 1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0 183 940 263"> <tr> <td>A16</td> <td>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/table>	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	(생략)	<p><별표 1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25 183 1865 263"> <tr> <td>A16</td> <td>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able>	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	(현행과 같음)	
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	(생략)						
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	(현행과 같음)						
<p><별표 1-1></p> <p>(생략)</p>	<p><별표 1-1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						
<p><별표 2></p> <p>(삭제)</p>		<p>- <별표2> '은행별 지원 제외 대상 신용등급' 삭제</p>						
<p><별표 3></p> <p>(생략)</p>	<p><별표 2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						
<p><별표 4></p> <p>(생략)</p>	<p><별표 3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						
<p><별지 제1호 서식> ~ <별지 제2호 서식></p> <p>(생략)</p>	<p><별지 제1호 서식> ~ <별지 제2호 서식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						
<p><별지 제3호 서식></p> <p>한국은행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</p> <p>(생략)</p> <p>주: 4) 일반지원부문 해당시 "0", 전략지원부문 해당시 "1", 특별지원부문 해당시 "3", 최종배정월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"4"로 기재</p> <p>주: 5)~15)</p> <p>(생략)</p>	<p><별지 제3호 서식></p> <p>한국은행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주: 4) 일반지원부문 해당시 "0", 전략지원부문 해당시 "1",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"2", 특별지원부문 해당시 "3",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"4"로 기재</p> <p>주: 5)~15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- 지원부문 분류 코드 추가</p>						
<p><별지 제4호 서식> ~ <별지 제5호 서식></p> <p>(생략)</p>	<p><별지 제4호 서식> ~ <별지 제5호 서식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						
<p><별지 제6호 서식></p> <p>창업중소기업 확인서</p> <p>(생략)</p> <p>(제외대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생략) ○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 해당하는 업체(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잼블링 및 베틀업, 기타 서비스업,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) 	<p><별지 제3호 서식></p> <p>창업중소기업 확인서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제외대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행과 같음) ○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 해당하는 업체(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잼블링 및 베틀업, 기타 서비스업,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) 	<p>- 정부부처 명칭 변경</p>						